

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



Contents

I

분리배출표시 제도 안내



분리배출표시 제도란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여 생산자들의 재활용 의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관련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4조(분리배출표시)

I 분리배출표시 제도 안내

1. 분리배출표시 대상	3
2.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	4
3.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	5
4. 분리배출표시 용어 정의	6
5.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	7

II 분리배출표시 도안

1. 도안 작도요령	8
2. 도안내부 표시문자·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	9
3. 개정 도안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예시	10
4. 분리배출 일괄 표시	12

III 분리배출표시 관련 FAQ

1. 공통사항	13
2. 종이포장재 관련 사항	14
3.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	14

1. 분리배출표시 대상

[관련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6조 및 제18조]

포장재의 종류(A)	포장 대상품목(B)
✓ 종이팩 ✓ 금속캔 ✓ 유리병(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) ✓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	✓ 음식료품류 ✓ 농·수·축산물 ✓ 세제류 ✓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·린스 ✓ 의약품 및 의약외품 ✓ 부탄가스제품 ✓ 살충·살균제 ✓ 의복류 ✓ 위생용 종이제품 ✓ 고무장갑 ✓ 부동액·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(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) ✓ 상가품목 이외의 제품(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에 한함)
✓ 합성수지재질 필름·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	✓ 전기기기류 및 개인용컴퓨터(모니터 및 자판 포함)
✓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·쇼핑백 (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외)	



※ **포장재의 종류(A)** 및 **포장 대상품목(B)**이 상기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포장재의 경우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에 해당합니다.

※ 그 밖의 종이·금속·유리·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 포장재의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지정을 받는 경우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더라도, 규모에 관계없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모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합니다.



2. 분리배출표시 기준 및 방법 [관련근거 : 「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」제5조]

기 준	방 법
기 준 일	✓ 제품의 제조일
표시방법	✓ 인쇄, 각인 또는 라벨링
표시크기	✓ 가로, 세로 최소 8mm 이상(표시재질 문자제외)
표시색상	✓ 표시 대상 제품·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 -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, 「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 용기와 동일한 색상사용 권장)
표시위치	✓ 제품·포장재의 정면,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- 형태·구조상 정면, 측면 또는 바코드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 가능
다중포장재	✓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표시 - 분리되지 않는 다중포장재와 소재·구조상 개별포장재마다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 경우 주요 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 가능
수입제품	✓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 가능 ✓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표시 가능
무라벨 페트병 (먹는샘물)	✓ 「먹는물관리법」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소포장 제품 중 ①용기에 라벨을 사용하지 않거나 ②병마개 부착 라벨을 사용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를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그 포장지의 겉면에 부착된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 가능 -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

3. 분리배출표시 적용예외

[관련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6조 및「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」제6조]

구 분	적용예외 대상
분리배출표시 적 용 예 외	✓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‘50제곱센티미터 미만(용기,트레이류)’, ‘100제곱센티미터 미만(필름 포장재류)’인 경우 ✓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✓ 소재·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·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✓ 랩 필름(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) ✓ 사후관리 서비스(A/S)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·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
분리배출 일괄표시 적 용 예 외	✓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의 용기·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(일괄표시 부분) 표시생략 가능



4. 분리배출표시 용어 정의 [관련근거 : 「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」제2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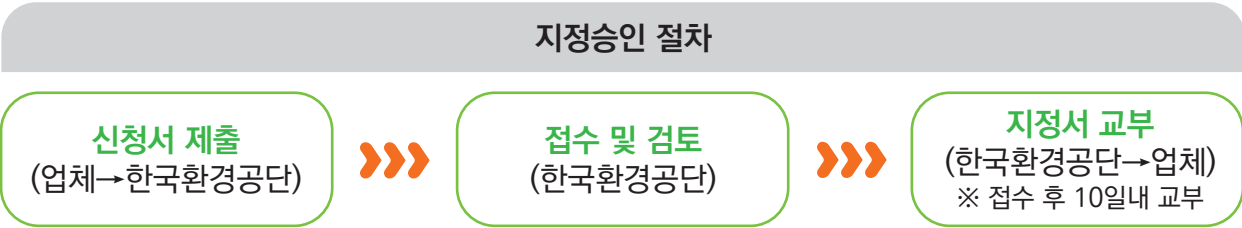
용 어	정 의
포장재	제품의 수송·보관·취급·사용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치·상태를 보호하거나 품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의 포장에 사용된 재료·용기 등
다중포장재	하나의 제품을 포장하는데 받침접시와 외부포장재 등으로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된 포장재 또는 뚜껑과 본체 등으로 2개 이상의 포장재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폐기물의 배출 시 분리되어 배출될 수 있는 포장재
복합재질 포장재	2개 이상의 소재·재질이 혼합되거나, 도포(코팅) 또는 첩합(라미네이션)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포장재
일괄표시	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, 그 표시 상하·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 하는 것
소포장 제품	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종합제품 중 같은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
멸균팩	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것
일반팩 (살균팩)	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18조제1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으로서 합성수지가 부착된 것 (멸균팩은 제외)



5.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

[관련근거 :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시행규칙 제11조]

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기타 종이·금속·유리·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 제품·포장재의 제조업자 등이 **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닌** 포장재에 대해 자율적으로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,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

신청서 제출

분리배출표시 사용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**사업장 소재지 관할 환경본부 또는 지사로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※ 구비서류

- 분리배출표시 지정신청서 1부
-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**재질검사 성적서**(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및 그 밖의 복합재질 제품·포장재에 한함) 또는 **포장재의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*(시험성적서, 포장재 재질·구조 증명서 등)
*** 종이 단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/첩합 등의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, 단면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**
- 제품·포장재의 생산·판매량 및 폐기물의 회수체계에 관한 사항
- 분리배출표시 도안이 표시된 상표 등에 관한 사항

신청서 접수 및 검토

- 지정신청서는 주된 사업장* 소재지의 **한국환경공단 환경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**합니다.
- * 동일 품목을 여러 지역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경우, 생산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 또는 본사 소재지를 주된 사업장으로 함**
- 지정신청서 제출시 제출된 자료, 견본 등은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한 후 정식 접수 전에 예비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정서 교부

한국환경공단은 지정신청서를 **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** 지정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업체에 교부합니다.

분리배출표시 도안

1. 도안 작도요령 [관련근거 :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4조]

유 형	예 시	작도요령
일반적인 경우		✓ 심벌마크 사용시 최소크기는 8mm이상 (표시재질 문자 제외)으로 한다. ✓ 심벌마크 각면의 연장선은 정삼각형이고, 연장선의 내각은 60도이며, 화살표 뒷부분의 꺾이는 부분의 내각은 120도로 한다. ✓ 심벌마크 라인의 폭이 A이면, 마크 내부 중앙부에 위치한 표시 문자의 높이는 2자(페트, 캔류, 종이, 유리)인 경우에는 2.4A, 3자(비닐류, 일반팩, 멸균팩)인 경우에는 2.35A, 4자(플라스틱)인 경우에는 2.2A로 한다. ✓ 심벌마크와 표시재질 문자의 간격은 0.6A로 한다. ✓ 심벌마크의 가로 폭은 9.7A로 한다.
'도포·첩합 등'에 해당하는 경우		

- 상기 표시 도안의 내부 표시 문자 '캔류' 및 표시 재질 '알루미늄'은 도안 내부 표시문자와 표시 재질의 예시임
- '도포·첩합 등'이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제품·포장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·포장재의 구성부분에 타 소재·재질(금속, 생분해성 수지 등)이 혼합되거나, 도포(코팅) 또는 첩합(라미네이션) 등의 방법으로 부착된 것으로서, 타 소재·재질이 해당 구성 부분으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.

가. 종이팩(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

나. 폴리스티렌페이퍼(PSP)

다. 페트병

라. 기타 합성수지 용기·트레이류(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)

2. 도안내부 표시문자·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[최신개정 2021.07.09]

표시문자				
구 분	도안내부 표시문자	도안외부 색채	도안예시	표시재질
플라스틱	무색페트	노랑색		- , 바이오, 종량제 배출
	플라스틱	파랑색		PET, HDPE, LDPE, PP, PS, OTHER, 바이오PET, 바이오HDPE, 바이오LDPE, 바이오PP, 바이오PS, 종량제 배출
	비닐류	보라색		
금 속	캔 류	회 색		철, 알루미늄(또는 알미늄)
종 이	종 이	검정색		-
	일반팩 (살균팩)	녹 색		- , 종량제 배출
	멸균팩	청록색		- , 종량제 배출
유 리	유 리	주황색		-
도포·첩합 등	-	빨강색		-

※ 합성수지재질 중 용기류인 경우는 **플라스틱**으로, 필름·시트형인 경우 **비닐류**로 구분됩니다.

※ 상기 도안 중 '종이' 도안은 **지정신청을 통한 승인** 후 사용 가능합니다.

※ **PET**: Polyethylene terephthalate **HDPE**: High Density Polyethylene, **LDPE**: Low Density Polyethylene, **PP**: Polypropylene, **PS**: Polystyrene

※ **OTHER**: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, 글리콜변성PET수지(PET-G)가 포함된 재질,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(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)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.

※ **바이오**: 「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」에 따른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, 'PET', 'HDPE', 'LDPE', 'PP', 'PS'와 물성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표시 가능(권장사항)

※ 상기 도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(www.iepr.or.kr)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홈페이지 접속 ▶ [제도소개] ▶ [분리배출표시제도] ▶ [분리배출표시 도안]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3. 개정 도안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예시

포장재	예 시	기 존	변 경
종이팩	마개·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며,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	 뚜껑:HDPE 개봉부:LDPE	 뚜껑:HDPE
	① 일반팩(살균팩) ② 멸균팩  1. 폴리에틸렌 2. 종이 3. 폴리에틸렌  1. 폴리에틸렌 2. 종이 3. 폴리에틸렌 4. 알루미늄 5. 폴리에틸렌 6. 폴리에틸렌		① 일반팩 ② 멸균팩  ② 멸균팩 
페트병	몸체와 분리 불가능한 금속스프링 펌프 및 타재질 라벨* 	무색페트 재료의 몸체에 분리 가능한 금속스프링 펌프를 사용한 경우 	① ②  ③ 무색페트 펌프종량제 배출 
	유색페트에 금속스프링 펌프를 사용한 경우 	PET-G 몸체에 몸체와 분리 가능한 합성수지 이외의 복합재질 스포이드 마개를 사용한 경우 	④ 플라스틱 PET 펌프종량제 배출  ⑤ 플라스틱 OTHER 마개종량제 배출 

포장재	예 시	기 존	변 경
합성수지 용기류	합성수지 이외의 재질과 병합 사용 (합성수지 + 탄산칼슘 또는 생분해성수지, 미네랄 등) 	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타재질 라벨* 	① ② ③  ④ 플라스틱 OTHER 펌프종량제 배출 
	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몸체와 분리가 불가능한 잡자재 사용 	복합재질로 몸체와 분리가 가능한 금속스프링 펌프사용 	④ 

*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(단, 종이재질은 제외)



4. 분리배출 일괄표시

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
	구 성	기본도안	일괄표시
예시 1	주요부분 : 무색페트 뚜껑 : HDPE 라벨 : PP		
예시 2	주요부분 : 무색페트 라벨 : PP 펌프 : 금속스프링 펌프		
예시 3	전면 : 무색페트 후면 : 종이* (예시: 칫솔 등 블리스터 포장) *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불필요 (고시 제5조제5호)		
예시 4 (수입제품)	내포장재 : 유리 외포장재 : 종이* *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불필요 (고시 제5조제8호)		
예시 5 (수입제품)	내포장재 : LDPE 외포장재 : LDPE		
예시 6 (수입제품)	내포장재 : PP (용기류), 라벨 LDPE, 마개 OTHER 외포장재 : LDPE (필름류)		

※ 일괄표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제품·포장재의 표시 여건에 맞게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기재하시면 됩니다. (내포장재/외포장재 구분, 뚜껑/캡/마개 등 구성품 명칭, 줄바꾸기 등)

III

분리배출표시 관련 FAQ



1. 공통사항

- Q**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표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- A** **2022년 1월 1일 이후 새로이 출시되어 최초로 제조되는** 분리배출 표시대상 제품·포장재부터 적용되며, 기존 출시된 제품·포장재의 경우 재고소진 및 동판 교체비용 등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**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**됩니다.
* 수입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함
- Q** 2022년 1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신제품은 무슨 의미인가요?
- A** 2022년 1월 1일 이후 **기업으로서 처음 생산하는 제품**을 의미합니다. 예를들어 동일 제품의 포장을 리뉴얼하여 새롭게 제조하는 제품도 신제품으로 간주합니다.
- Q** 개정규정 시행 전이라도 개정 분리배출표시를 적용할 수 있나요?
- A** 「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규정의 시행일('22. 1. 1.) 또는 기존제품 적용일 도래('24. 1. 1.) 전이라도 개정규정에 따른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Q** 외국의 분리배출표시가 각인되어 있거나 숫자로 분리배출표시 마크가 있는 수입제품 포장재의 경우 국내 분리배출표시 마크를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?
- A** 포장재에 각인되어 수입되는 제품과 같이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외국의 분리배출표시와 국내의 분리배출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, 가급적 국내 분리배출표시 도안만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Q** 수입제품의 경우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가 어려운데 어떻게 표기해야 하나요?
- A** **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** 내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의 경우, 재질명 등을 **외포장재에 일괄표시** 할 수 있습니다. 다수의 내포장재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,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.
- Q** '도포·첩합 등' 표시를 하는 경우,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에 따른 '재활용 어려움' 등급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?
- A** 분리배출표시 제도와 '재활용 어려움' 등급 표시는 각각 별도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'재활용 어려움' 등급 표시 대상이면서 '도포·첩합 등'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**모두 표시**하여야 합니다.

- Q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제재사항이 있나요?
- A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**300만 원 이하**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Q 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과 반드시 동일한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나요?
- A 표시 도안의 외부색채 관련 규정은 **권장사항**입니다.
단, 표시 도안의 색상은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합니다.

2. 종이포장재 관련 사항

- Q 종이단상자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?
- A 종이 재질의 포장재는 분리배출이 용이한 재질로 **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**.
단, 분리배출표시를 원하시는 경우 관할 환경본부·지사에 지정신청 및 승인 후 분리배출 표기가 가능합니다.
- Q 종이에 코팅을 했을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표시 하나요?
- A 종이 단면이나 양면에 합성수지 재질이 코팅·접합되어 있는 경우 ‘종이’로 분류하며, **종이는 재활용의무대상이 아닙니다**. 다만, 종이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자 할 때는 공단에 지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종이재질의 지정승인은 재활용 용이성을 감안하여 ‘합성수지가 단면 코팅된 종이’에 한해 허용하고 있습니다(단면 코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첨 필요).
- Q 종이포장재와 종이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?
- A 종이팩은 우유팩, 주스팩과 같이 **종이의 양면에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 등으로 접합하여 액체를 담아 밀봉할 수 있도록 만든 포장재**이므로 일반 종이상자와는 구별됩니다.

3. 세부 표기방법 및 기타

- Q 튜브형태로 된 알미늄 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어떻게 하나요?
- A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포장재는 유리병, 금속캔, 종이팩,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가 있으며 **캔이 아닌 금속재질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 포장재가 아닙니다**.
- Q 발포합성수지 EPS, EPP, EPE의 분리배출표시는 어떻게 하나요?
- A EPS는 PS로, EPP는 PP로, EPE는 (LDPE/HDPE)로 표시합니다.

재질계열	재질 계열별 예시
PP	OPP, CPP, A-PP, BOPP, IPP, I-PP, S-PP, EPP
PS	EPS, PSP, GPPS, HIPS, MIPS, OPS
PET	A-PET, B-PET, C-PET, E-PET, F-PET

- Q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?
- A **플라스틱**은 어느 정도 강성을 지닌 것으로 용기 형태로 된 포장재이고, **비닐류**는 얇은 막 형태의 포장재입니다.
(비닐류는 두께 기준이 0.25mm 미만이면 ‘필름형’, 0.25mm 이상이면 ‘시트형’으로 구분)
- Q 플라스틱 분리배출표시 내부 문자를 프라스틱 또는 PLASTIC 으로 표기해도 되나요?
- A 분리배출표시 기본도안 및 표기방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으로 **도안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**합니다. (단, 식별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안색채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함)
※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도안파일을 내려받아 정비례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
- Q 플라스틱 PE재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?
- A 반드시 **LDPE**와 **HDPE**를 구분하여 표시하며, LDPE+HDPE의 경우 비율이 큰 쪽으로 표시합니다.
같은 비율로 혼합 시에는 LDPE와 HDPE 중 어떤 것으로 표시하여도 무방합니다.
- Q 펌프용기의 몸통, 뚜껑, 펌프 재질이 동일(ex. PS)한 경우에는 분리배출표시를 하나만 해도 되나요?
- A 주요 재질(몸통)에 플라스틱 ‘PS’ 도안사용 후 추가로 (뚜껑:PS, 펌프:PS) 일괄표기 가능합니다.
단, **같은 재질이라도 별도의 예외사항은 없으므로 각 포장재에 대한 재질을 모두 표시**해야 합니다.
- Q PLA(생분해성수지제품)용기의 분리배출표시 방법은?
- A 『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』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**‘생분해성수지제품’은 분리배출표시 의무대상이 아닙니다**.
※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플라스틱과 물성이 달라 종량제로 배출하여야 함
- Q 종이팩에 분리불가능한 합성수지 마개·잡자재가 부착되었으며, 뚜껑은 분리가 되는 경우 분리배출 표시 방법은?
- A 합성수지 마개 및 잡자재의 중량이 전체 중량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 ‘도포·접합 등’ 표시를 해야하며, ‘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’ 제5조제5호에 따라 분리되는 뚜껑은 [뚜껑 : 표시재질(예 : PP)] 로 일괄표시하시면 됩니다.



한국환경공단 권역별 연락처



관할본부	전화번호	관할지역
수도권동부환경본부	031-590-0651~4, 0656, 0658, 0671	경기도(포천, 동두천, 의정부, 가평, 구리, 남양주, 하남, 양평, 성남, 광주, 여주, 용인, 이천, 안양, 과천, 군포, 의왕, 수원, 오산, 평택, 안성)
수도권서부환경본부	02-3153-0570~9, 5404, 5405	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(연천, 파주, 양주, 고양, 김포, 부천, 광명, 시흥, 안산, 화성)
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	051-366-3770~2, 3761~5	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
대구경북환경본부	053-580-7545, 7541, 7505, 7553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
충청권환경본부	042-939-2304, 2337~9, 2343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, 세종특별자치시
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	062-949-0745, 0747, 0748, 0304, 0312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
강원환경본부	033-240-9542, 9547	강원도
전북환경본부	063-279-0835~9	전라북도
충북지사	043-219-6442~4, 6447	충청북도
제주지사	064-723-6542	제주특별자치도

※ 수도권동부,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관할구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분리배출표시 가이드북

본 책자는 분리배출표시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분리배출표시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(www.iepr.or.kr) 내 [자료실]을 참고하시거나,
업체 소재 관할 환경본부 및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책자는 친환경용지인 190g/㎡ 몽블랑지를 사용하여 인쇄하였습니다.